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모급여 지급 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22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2022호)

가. 제 안 자 : 문정복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8. 6.

다. 회 부 일 : 2025. 8.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4조제5항)

- 개정안은 현행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금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나누어 지급될 경우(제10조제4항)¹⁾, 보육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금 지급액도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u>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에 지급된 아동수당 금액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는</u>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주요 검토 사항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조 5,678억원임.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2025년	215	19,587	25,678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²⁾를 도입하여 2025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참고자료).

<2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예산액>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2년 <영아수당>	월평균 15.1	3,731	5,419
2023년 <부모급여>	월평균 32.3	16,214	23,622
2024년 <부모급여>	월평균 47.2	28,887	42,267
2025년 <부모급여>	월평균 43.8	21,353	30,743

- * 자료 : 보건복지부
- *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
- * 서울 35%, 지방 65% 차등보조 ±10%

- 특히 부모급여는 현금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혼합하여 지급될 수 있는바(「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전액 현금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보육료를 차감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즉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영유아 기본 보육료(부모 보육료)가 2025년 상반기 기준 54만원이었으므로, 부모급여 100만원 중 차액 46만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임.

2)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단계적 확대)

□ 한편, 보육서비스 이용권은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최근 보육료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현금)은 줄어드는 실정임.

-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의 경우 보육료가 5% 인상되었으므로, 0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인상에 따라 부모가 현금으로 받는 차액은 기존 46만원(100만원에서 54만원을 뺀 금액)에서 43만 3천원(100만원에서 56만 7천원을 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됨.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부모급여액도 그 금액만큼 인상되도록 하여 부모가 받는 부모급여 현금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최근 3년간 보육료 단가 및 인상률 추이>

(단위: 천원, %)

연령	2023년 보육료	2024년 보육료	2025년 보육료	2025년 하반기 보육료
0세	514	540(5.0)	540(-)	567(5.0)
1세	452	475(5.0)	475(-)	500(5.0)
2세	375	394(5.0)	394(-)	414(5.0)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개정안에 따라 2026년 기준 추가 재정 소요는 1,042억원(국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를 때 2026년 국비 기준 1,042억원의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측되고, 타 양육지원제도와의 관계,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규모 재정 소요와 타 양육지원제도와의 관계,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부칙에서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하려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모급여는 0~1세 모든 아동이 지원대상인 만큼 이미 지원이 종료된 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액을 지급하는 업무 특성상 아동의 어린이집 입·퇴소일자, 가구 구성(보호자) 변동 등 과거 이력을 추적·확인하여 소급 지급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행정안전부	· 어려운 지방지정 여건을 고려할 때 별도 자원 조달 방안 없는 재정사업 확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 재정자립도 '21년 48.7%, '22년 49.9%, '23년 50.1%, '24년 48.6%, '25년 48.6%
부산광역시	· 소급지원 규정은 집행 과정상 대상자 추출·검증이 어렵고, 기지급 계좌 재확인 절차 곤란 등 문제 발생 우려로, 소급지원 없이 시행 일 이후 적용 필요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

부모급여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도입('23~)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사업 개요

- (지급대상·금액) '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

* ('23)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22년생부터 적용)

- (법적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23.9.14 시행)에 따라 8세 미만에 대한 아동수당 10만원 외에 2세 미만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 (지급대상) '25년 월 438천명(0세 21.7천명, 1세 22.1천명)

- (소요예산) '24년 2조 8,887억원 → '25년 2조 1,353억원(국비기준)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양육 방식에 따라 신청	유형(3가지)		연령	지원액	부모 혜택(현금+바우처*)	
	가정 양육	① 부모급여(현금)	⇒	0세	100만원	현금 100만원
				1세	50만원	현금 50만원
	어린이집	② 부모급여(보육료)	⇒	0세	100만원	바우처 56.7만원 현금43.3만원
				1세	50만원	(0세반) 바우처 56.7만원
						(1세반) 바우처 50만원 현금 지급액 없음
	아이돌봄	③ 부모급여(종일제 돌봄)	⇒	0세	100만원	바우처(최대) 가형 207만원, 나형 146.2만원, 다형 73.1만원 라형 36.6만원
				1세	50만원	

* 바우처 일부·미사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